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9. 2. 6.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월 27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9년 1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59회 임시회 제 3 차 위원회 ('99. 2. 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고 준 기

가. 개정이유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지원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함.
-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되거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단, 제시한 매매용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반환되어 장애인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 제외)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회수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거나,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8. 11. 12.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사항임.
- 안 제3조의2 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중 승용차는 배기량이 2,000씨씨이하, 승합자동차는 15인승이하, 화물차는 적재정량이 1톤이하 및 이륜차중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과 기존의 면제대상자동차의 소유유무 구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부칙 안 제1항에는 동 개정조례안을 '99. 1. 1. 소급적용하도록 규정된 바,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배치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적용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는 사료되나 정기분 면허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인 점을 감안하여 지난 '98. 11. 19. 통보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동 개정조례안을 '98년도 정기회 회기중에 의회에 제출하여 개정하였다면 소급적용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9. 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지원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골자

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함.

나.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되거나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거나(단, 제시한 매매용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반환되어 장애인 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제외)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회수 또는 사용할 수 없는것으로 인정되거나,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거나,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개정근거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4. 조 례 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다음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를 장애인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장애인 등에게 반환되거나 장애인 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

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년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3조의2(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u> ① <u>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동차를 등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를 장애인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장애인 등에게 반환되거나 장애인 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